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21 선고 2022가단1281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9 선고 2023나34935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21 선고 2022가단128184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유병연,김정원,박환철

피 고 1. B

2. C

변론종결 2023. 2. 21.

판결선고 2023. 3. 21.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6,552,883원 및 이 중 4,045,222원에 대하여 2022. 5. 16. 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4. 28.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831,95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2,831,9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는 2011. 6. 10. 피고 B에게 금 440만 원을 대여하면서,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28.3%, 지연이자율 연 33%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D 주식회사는 2016. 5. 4. E 유한회사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5. 23. 피고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E 유한회사는 2019. 6. 20.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9. 7. 8. 피고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별지 채권계산서와 같다.

다. 피고 B의 모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5. 26.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G’, ‘C(수익자, 피고2)’, ‘B(채무자, 피고1)’, ‘H’, ‘I’, ‘J’, ‘K’가 있다.

라.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1. 4. 28.경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21. 5.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 B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법원 등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L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E 유한회사로부터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16,552,883원 및 이 중 4,045,222원에 대하여 2022. 5.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무자력인 피고 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피고 C에게 해당 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의 사해 의사와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 C으로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위 각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2012. 4. 12. 망인의 상속인 중 한 명인 'G'의 남편 M이 이 사건 부동산 및 경남 함양군 N건물 O호 총 5개 부동산을 담보로 L조합으로부터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② L조합은 위 총 5개 부동산 중 위 N건물 O호에 대하여는 2016. 12. 30. 일부 포기로 근저당권말소등기가 경료된 사실, ③ L조합은 2021. 3. 2. 2020. 5. 26.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들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 대위등기를 경료하고, 2021. 4.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P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 ④ 피고 C이 2021. 4. 28. L조합에 대한 채무 5,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L조합이 2021. 11. 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경매를 취하한 사실, ⑤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총액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71,823,700원으로서 피고 C이 L조합에 변제한 5,200만에 비하여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닌 점, ⑥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당시 피고 B의 채무는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이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Q의 2022. 9. 5.자 신용정보조회회답서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당시에 R카드에 금 2,029,000원(2011. 9. 27. 연체 등록, 2018. 9. 27. 연체 해제)로 되어 있는바, 당시 위 채무 존재 여부는 불분명함], ⑦ 피고 B가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상속을 통한 피고 B의 책임재산은 2,831,957원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⑧ 피고 B 뿐만 아니라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도 모두 실질적으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동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거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 C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용

부동산 목록

1. 경상남도 함양군 대 99㎡

2. 경상남도 함양군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함양군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36.36㎡

3. 경상남도 함양군 전 350㎡

4. 경상남도 함양군 답 1,435㎡ 갈.

채권 계산서

채권자 : 주식회사

채무자 :

위 사건과 관련하여 채권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기준일 : (2022.05.15)

계좌번호	대출과목	원금잔액	비용잔액	연수전 이자잔액	연수후 이자잔액	합 계	이자 산출근거
	오토-용고차	4,045,222	0	9,078,521	3,429,140	16,552,883	아래장표
합 계		4,045,222	0	9,078,521	3,429,140	16,552,883	

이자산출근거

계좌번호	대출과목	원금	시작일	종료일	이율	일수	연수전 이자잔액	연수후 이자잔액	비고
	오토-용고차	4,045,222	2019-05-02	2022-05-15	27.90%	1110	9,078,521	3,429,140	
		0	2022-05-15				0	0	회수
합 계							9,078,521	3,429,140	

